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8-54호
2018. 7. 6.(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고 시(3)

- 대전 도시관리계획(소로2-미호1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 제2018-95호) ...1
- 대전 도시관리계획(소로3-삼정2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 제2018-96호) ...3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8-98호)4

공 고(5)

- 주거급여 보장비용의 반납(징수)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8-543호)5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18-544호)6
- 도로의 통행제한 공고(공고 제2018-555호)7
- 「제4회 대덕구민대상」 수상 후보자 공모(공고 제2018-556호)8
- 공시송달(공고 제2018-561호)10

입법예고(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18-547호)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8-562호) ...56

공 람									
--------	--	--	--	--	--	--	--	--	--

대전 도시관리계획(소로2-미호1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삼정동 산9-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소로2-미호1호선)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고시문 및 지형도면 열람가능)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과(042-608-511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7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도로)

1)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미호 1	6~53	국지 도로	2,143 (2,013)	미호 435-1	삼정 21-2	일반 도로	-	2006.9.4. (대전청 20 06-94)	법면부 포함, 방재시설과 중복결정
변경	소로	2	미호 1	6~53	국지 도로	2,561 (2,013)	미호 435-1	소로 3-2	일반 도로	-	2006.9.4. (대전청 20 06-94)	도로연장

주 : ()는 대청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방재시설과 중복결정 구간임

2)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미호1	소로2-미호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연장 - L : 2,143m → 2,561m (증 41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삼정동 이촌마을 진입로 도로폭이 좁아 차량통행 및 농기계 교행 등이 어려운 상태로 도로폭원 확장을 통한 지역주민 안전사고예방 및 민원 해소를 위하여 금회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코자 함

② 도시관리계획(도로) 지형도면 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고시	소로	2	미호1	6~53	국지도로	2,561	미호435-1	소로3-삼정2	일반 도로	
기승인	소로	2	미호1	6~53	국지도로	2,143	미호435-1	삼정21-2	일반 도로	
금회승인	소로	2	미호1	6~53	국지도로	2,561	미호435-1	소로3-삼정2	일반 도로	종점 연장

3. 관계도서(도면포함) : 게재생략. 끝.

대전 도시관리계획(소로3-삼정2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덕구 삼정동 21-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와 도시계획정보체계(<http://upis.go.kr>)에서 고시문 및 지형도면 고시도 열람가능)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과(042-608-510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7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3	삼정2	6	국지 도로	337	소로3-삼정1 (삼정산9-3)	삼정20- 1	일반 도로		2006.7.20.	
변경	소로	3	삼정2	6~8	국지 도로	337	소로3-삼정1 (삼정산9-3)	삼정20- 1	일반 도로			종점부 선형변경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삼정2	소로 3-삼정2	· 종점부 선형 변경	· 막다른 도로의 불합리한 도로계획 정정을 위한 변경

나. 관계도서(도면포함) : 게재생략. 끝.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소	도 로 명 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 고
오정동 88-2	한밭대로972번길 79	2018 7. 6	건물신축	한밭대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9,7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정동 325-8	오정로63번길 16-17	2018 7. 6	건물신축	오정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6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7)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주거급여 보장비용의 반납(징수)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2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 환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내용: 주거급여 보장비용의 반납(징수) 미송달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주거급여법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3. 공고기간: 2018. 7. 6. ~ 2018. 7. 20.(14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소	미송달사유	환수결정금액	비고
윤○중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로 ○길 31, ○호 (선화동)	폐문부재	52,020원	

5. 공시송달내용 및 유의사항
 - 가.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 의거 보장비용을 징수하고자 하오니 붙임 반납고지서에 의한 금액을 2018.6.29.(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대덕구청 사회복지과 주거급여 담당(☎042-608-6383)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183-8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아 래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 적	너 비	길 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석봉동 183-8	55㎡	3m	18m	한묘택 김이배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2)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의 통행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의 통행제한 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8년 07월 0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대청로~노산하석로(대청조정지댐(보조댐) 공도교)
2. 구간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251 일원
3. 통행이 금지 및 제한되는 차량 : 공사 차량을 제외한 전차량
4. 통제기간 : 2018. 07. 16. ~ 2018. 12. 15.
5. 통행금지 또는 제한되는 사유
 - 대청조정지댐 공도교 보수보강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6. 통제방법
 - 대청조정지댐 양측(대전 용호동, 청주 서원구 현도면)전면통제(바리게이트, 신호수 배치 등) 및 공사 안내간판 설치
7.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지사 시설과(☎042-930-7215) 또는 시공사 (주)신광(☎010-5259-3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대덕구민대상」 수상 후보자 공모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하고 선행과 봉사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구민을 발굴 시상하고자 『제4회 대덕구민대상』 수상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8년 7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부문별 시상 대상

- 지역발전부문 : 지역주민에 앞장서서 지역개발과 발전, 봉사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자
- 사회복지부문 : 각종 사회복지사업,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및 봉사 등 나눔의 실천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공로가 있는 자
- 문화예술부문 : 예술, 문학, 언론 등의 분야에서 구민의 정서함양과 소질을 계발시켜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
- 체육진흥부문 : 체육발전과 구민건강 진흥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체육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 충효실천부문 : 충효 및 경로사상의 사회적 실천과 미풍양속의 전승을 통해 바람직한 전통가치관 확립에 공로가 있는 자

2. 시상인원 : 5명(부문별 1명)

3. 시상내용 : 대덕구청장 상패(부상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미지급)

4. 추천기준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대덕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체에 종사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로 시상부문별 현저한 공적으로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

5. 추천 제외 대상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다. 공사생활의 문란 등으로 지역사회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6. 추천권자 : 부문별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 동장

7.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18. 7. 9.(월) ~ 7. 31.(화) 18:00까지

※ 추천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부문 접수기간 연장 / 8. 7.(화) 까지

나. 접수서류

① 추천서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이력서 1부. ④ 반명함판 사진 2매

⑤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1부

※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에서 추천 양식을 상시 다운로드 가능

(구청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다. 접수처 : 대덕구 문화체육과

라.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7.31.(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전로 1033번길20 대덕구 문화체육과)

8. 수상자 선정 : 구정조정위원회의 공적심의를 거쳐 선정(9. 7.한)

※ 후보자가 없거나 공적이 미흡한 부문은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9. 시상일 : 2018. 10. 6.(토) 예정 / 대덕구민의 날 기념 행사시

※ 장소는 추후 통보

10. 기 타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문화체육과(☎608-6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1. 제 목 : 2018년 6월 자동차세 제1기분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7. 6. ~ 2018. 7. 19. (14일간)
3. 서류의 명칭: 2018년 6월 자동차세 제1기분 고지서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내역 참조

위 서류를 귀하(귀중)에게 우편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납기내 송달할 수 없어 납부기한을 2018년 7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니, 고지내역을 확인하시고 간주납기일(2018년 7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18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연번	납세번호	납세자번호	납세자명	세목	과세물건	납부세액 (원)	발송지	공고사유	공고일자	간주납기
1	106001-2018-06-1-520-001592	750215-*****	박*숙	자동차세	**소3696	447,48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심1길 103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2	106001-2018-06-1-546-001970	600110-*****	김*덕	자동차세	**두0503	404,690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5번길 52-15 (중리동)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3	106001-2018-06-1-570-002399	160111-*****	서광환경 산업주식 회사	자동차세	**주2436	314,7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당1길 63 (상서동)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4	106001-2018-06-1-525-005228	581215-*****	조*형	자동차세	**모2039	447,480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761번길 24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5	106001-2018-06-1-546-005562	721220-*****	강*규	자동차세	**너1611	472,1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31번길 22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6	106001-2018-06-1-546-009329	570125-*****	전*삼	자동차세	**거8543	429,970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21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7	106001-2018-06-1-546-011541	811109-*****	박*	자동차세	**너3831	425,96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158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8	106001-2018-06-1-525-012232	720928-*****	이*숙	자동차세	**마0264	404,690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761번길 24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9	106001-2018-06-1-570-012483	520109-*****	김*구	자동차세	**저6510	434,3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200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10	106001-2018-06-1-546-013195	780209-*****	양*근	자동차세	**수8962	402,6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54번길 19-7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연번	납세번호	납세자번호	납세자명	세목	과세물건	납부세액 (원)	발송지	공고사유	공고일자	간주납기
11	106001-2018-06-1-570-014622	680316-*****	김*수	자동차세	**거4118	454,580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265번길 81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12	106001-2018-06-1-550-015586	630616-*****	송*원	자동차세	**누2479	173,88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627번길 82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13	106001-2018-06-1-533-018411	690425-*****	김*영	자동차세	**도9723	565,1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로 394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14	106001-2018-06-1-533-019368	670815-*****	여*양	자동차세	**소6866	539,660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로23번길 30 (비래동)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15	106001-2018-06-1-546-019675	690122-*****	권*국	자동차세	**라1822	402,240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로3번길 32-10 (중리동)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16	106001-2018-06-1-610-020011	680415-*****	이*현	자동차세	**너0538	473,95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60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17	106001-2018-06-1-525-020689	160111-01**** **	애플모터스* 상품용*	자동차세	**가4665	70,1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115번길 71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18	106001-2018-06-1-525-020691	160111-01**** **	애플모터스* 상품용*	자동차세	**가4692	70,1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115번길 71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19	106001-2018-06-1-525-020700	160111-01**** **	애플모터스* 상품용*	자동차세	**가4930	70,1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115번길 71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20	106001-2018-06-1-525-020701	160111-01**** **	애플모터스* 상품용*	자동차세	**가4949	70,1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115번길 71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21	106001-2018-06-1-510-027114	770616-*****	김*희	자동차세	**저0271	406,91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185번길 30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연번	납세번호	납세자번호	납세자명	세목	과세물건	납부세액 (원)	발송지	공고사유	공고일자	간주납기
22	106001-2018-06-1-533-029223	780927-*****	박*경	자동차세	**누9410	447,480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서로25번길 19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23	106001-2018-06-1-546-029577	561019-*****	한*용	자동차세	**어0621	444,950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로18번길 10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24	106001-2018-06-1-580-030533	610213-*****	김*락	자동차세	**거0792	453,34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0번길 77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25	106001-2018-06-1-546-030986	920710-*****	김*천	자동차세	**러6188	402,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1114번길 34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26	106001-2018-06-1-543-033179	830716-*****	김*룡	자동차세	**부0484	447,480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남로56번길 20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27	106001-2018-06-1-543-034735	470120-*****	이*옥	자동차세	**거2695	421,2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 16-3 (송촌동)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28	106001-2018-06-1-570-036188	741125-*****	신*호	자동차세	**노0440	468,1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200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29	106001-2018-06-1-533-036600	671116-*****	한*재	자동차세	**버6516	447,480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로7번길 40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30	106001-2018-06-1-546-037081	134511-*****	주식회사랜드플래닝	자동차세	**누9679	404,560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로 64-1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31	106001-2018-06-1-546-037211	160111-01**** **	(주)플러스전력	자동차세	**라0135	445,010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36번길 33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32	106001-2018-06-1-610-039811	590924-*****	김*동	자동차세	**누5525	498,92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78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연번	납세번호	납세자번호	납세자명	세목	과세물건	납부세액 (원)	발송지	공고사유	공고일자	간주납기
33	106001-2018-06-1-560-040577	630129-*****	정*순	자동차세	**부3359	402,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34	106001-2018-06-1-533-040594	741111-*****	감*진	자동차세	**부3717	498,820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서로10번길 21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35	106001-2018-06-1-510-040905	830402-*****	감*진	자동차세	**고0126	447,48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2번길 13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36	106001-2018-06-1-560-045887	611019-*****	이*옥	자동차세	**무0571	480,570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44번안길 14 (석봉동)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37	106001-2018-06-1-560-047532	740724-*****	송*혁	자동차세	**서5069	382,32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38	106001-2018-06-1-560-048317	760607-*****	김*권	자동차세	**어6600	470,780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2로 134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39	106001-2018-06-1-580-049530	160111-00**** **	맛샘	자동차세	**어6055	63,600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산1길 55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40	106001-2018-06-1-570-051008	160111-02**** **	서광환경산 업주식회사	자동차세	**거2713	27,880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당1길 63 (상서동)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41	106001-2018-06-1-570-051010	160111-02**** **	서광환경산 업주식회사	자동차세	**거2728	27,880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당1길 63 (상서동)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42	106001-2018-06-1-570-051376	160111-02**** **	서광환경산 업주식회사	자동차세	**버8153	46,960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당1길 63 (상서동)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43	106001-2018-	160111-02****	서광환경산	자동차세	**마7539	96,560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령인	2018.07.06.	2018.07.31.

연번	납세번호	납세자번호	납세자명	세목	과세물건	납부세액 (원)	발송지	공고사유	공고일자	간주납기
	06-1-570-052 751	**	업주식회사				상서당1길 63 (상서동)	없음		
44	106001-2018-06-1-570-053 068	160111-02**** **	서광환경산 업주식회사	자동차세	**주4721	46,960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당1길 63 (상서동)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45	106001-2018-06-1-580-055 963	160111-00**** **	맛샘	자동차세	**나7311	27,880	충청남도 공주시 봉 황산1길 55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46	106001-2018-06-1-580-055 964	160111-00**** **	맛샘	자동차세	**나7314	46,960	충청남도 공주시 봉 황산1길 55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47	106001-2018-06-1-580-055 965	160111-00**** **	맛샘	자동차세	**나7336	46,960	충청남도 공주시 봉 황산1길 55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48	106001-2018-06-1-580-055 966	160111-00**** **	맛샘	자동차세	**나7399	46,960	충청남도 공주시 봉 황산1길 55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49	106001-2018-06-1-580-055 968	160111-00**** **	맛샘	자동차세	**나7424	46,960	충청남도 공주시 봉 황산1길 55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50	106001-2018-06-1-580-055 969	160111-00**** **	맛샘	자동차세	**나7453	27,880	충청남도 공주시 봉 황산1길 55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51	106001-2018-06-1-580-055 971	160111-00**** **	맛샘	자동차세	**나7474	33,750	충청남도 공주시 봉 황산1길 55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52	106001-2018-06-1-580-055 972	160111-00**** **	맛샘	자동차세	**나7483	46,960	충청남도 공주시 봉 황산1길 55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53	106001-2018-06-1-580-055 974	160111-00**** **	맛샘	자동차세	**나7491	46,960	충청남도 공주시 봉 황산1길 55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54	106001-2018-06-1-580-055	160111-00****	맛샘	자동차세	**나7496	33,750	충청남도 공주시 봉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연번	납세번호	납세자번호	납세자명	세목	과세물건	납부세액 (원)	발송지	공고사유	공고일자	간주납기
	975	**					황산1길 55			
55	106001-2018-06-1-570-056 225	160111-02**** **	서광환경산 업주식회사	자동차세	**다3925	27,880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당1길 63 (상서 동)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56	106001-2018-06-1-570-056 801	160111-02**** **	서광환경산 업주식회사	자동차세	**러2384	67,2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당1길 63 (상서 동)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57	106001-2018-06-1-570-056 802	160111-02**** **	서광환경산 업주식회사	자동차세	**러2392	67,2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당1길 63 (상서 동)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58	106001-2018-06-1-570-058 738	160111-02**** **	서광환경산 업주식회사	자동차세	**러9486	46,960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당1길 63 (상서 동)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59	106001-2018-06-1-570-059 057	160111-02**** **	서광환경산 업주식회사	자동차세	**무1063	46,960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당1길 63 (상서 동)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60	106001-2018-06-1-570-059 496	160111-02**** **	서광환경산 업주식회사	자동차세	**누2807	46,960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당1길 63 (상서 동)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61	106001-2018-06-1-525-061 273	160111-01**** **	애플모터스* 상품용*	자동차세	**1르 6317	117,78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115번길 71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62	106001-2018-06-1-525-061 476	160111-01**** **	애플모터스* 상품용*	자동차세	**30고 1390	133,75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115번길 71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63	106001-2018-06-1-525-062 467	160111-01**** **	애플모터스* 상품용*	자동차세	**32거 7160	198,6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115번길 71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연번	납세번호	납세자번호	납세자명	세목	과세물건	납부세액 (원)	발송지	공고사유	공고일자	간주납기
64	106001-2018-06-1-525-062548	160111-01**** **	애플모터스* 상품용*	자동차세	**32구 4474	70,1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115번길 71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65	106001-2018-06-1-525-062720	160111-01**** **	애플모터스* 상품용*	자동차세	**32누 5419	133,55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115번길 71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66	106001-2018-06-1-525-062937	160111-01**** **	애플모터스* 상품용*	자동차세	**32로 1885	40,48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115번길 71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67	106001-2018-06-1-580-066262	160111-02**** **	주식회사에 스엠물류	자동차세	**87아 4855	35,2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17번길 5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68	106001-2018-06-1-580-066263	160111-02**** **	주식회사에 스엠물류	자동차세	**87아 4856	35,2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17번길 5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69	106001-2018-06-1-580-066264	160111-02**** **	주식회사에 스엠물류	자동차세	**87아 4858	35,2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17번길 5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70	106001-2018-06-1-580-066265	160111-02**** **	주식회사에 스엠물류	자동차세	**87아 4859	35,2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17번길 5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71	106001-2018-06-1-580-066266	160111-02**** **	주식회사에 스엠물류	자동차세	**87아 4867	35,2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17번길 5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72	106001-2018-06-1-580-066267	160111-02**** **	주식회사에 스엠물류	자동차세	**87아 4868	35,2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17번길 5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73	106001-2018-06-1-580-066268	160111-02**** **	주식회사에 스엠물류	자동차세	**87아 4870	35,2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17번길 5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74	106001-2018-06-1-580-066269	160111-02**** **	주식회사에 스엠물류	자동차세	**87아 4871	35,2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17번길 5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75	106001-2018-06-1-580-066270	160111-02**** **	주식회사에 스엠물류	자동차세	**87아 4872	35,2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17번길 5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76	106001-2018-	160111-02****	주식회사에	자동차세	**87아	35,2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령인	2018.07.06.	2018.07.31.

연번	납세번호	납세자번호	납세자명	세목	과세물건	납부세액 (원)	발송지	공고사유	공고일자	간주납기
	06-1-580-066 271	**	스엠물류		4873		신일동로17번길 5	없음		
77	106001-2018- 06-1-580-066 272	160111-02**** **	주식회사에 스엠물류	자동차세	**87아 4875	35,2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17번길 5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78	106001-2018- 06-1-580-066 273	160111-02**** **	주식회사에 스엠물류	자동차세	**87아 4877	35,2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17번길 5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79	106001-2018- 06-1-580-066 974	160111-02**** **	주식회사에 스엠물류	자동차세	**88아 4852	35,2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17번길 5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80	106001-2018- 06-1-580-066 975	160111-02**** **	주식회사에 스엠물류	자동차세	**88아 4860	35,2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17번길 5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81	106001-2018- 06-1-580-066 976	160111-02**** **	주식회사에 스엠물류	자동차세	**88아 4861	35,2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17번길 5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82	106001-2018- 06-1-580-066 977	160111-02**** **	주식회사에 스엠물류	자동차세	**88아 4862	35,2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17번길 5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83	106001-2018- 06-1-580-066 978	160111-02**** **	주식회사에 스엠물류	자동차세	**88아 4866	35,2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17번길 5	수령인 없음	2018.07.06.	2018.07.31.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2. 개정이유

소송사무운영 중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를 보완 하고, 소송패소 시 구상금 행사할 때 재정보증인에 대한 불필요사항을 삭제하며, 법률 고문변호사 중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정의에 대하여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함(안 제2조).
- 나.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에 대해 정함(안 제9조).
- 다. 반소·상소·상소포기에 대해 정함(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
- 라. 소송 패소시 재정보증인에 대해서 구상금의 납부를 요구하는 재정보증인의 불필요한 부분을 정비함(안 제18조).
- 마. 배상금의 임의변제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를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보완·정비함(안 제19조).

바.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에 대해 정함(안 제23조).

사.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 등을 규정함(안 제2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담당자 협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소관부서 협의

5) 입법예고: 2018. 7. 6. ~ 2018. 7. 26 / 20일 이상

※ 「행정절차법」 제43조 준수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7.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감사실(전화: 042-608-6062, FAX: 042-608-3811, E-mail: ksh056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감사실 담당자(전화: 042-608-60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구”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민사소송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사무 등”이란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과 민사소송 단독심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수행자 등”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8. “송무취급 공무원”이란 구청장이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위임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소송사건의 주관) 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둘 이상의 실·과에 관련되는 사건
2. 주관 실·과가 불분명한 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2장 소송사건의 수행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 및 처리) 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이송된 소송문서를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명기하여 즉시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보내어 처리토록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기획감사실장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이를 돌려보낼 수 없다.

④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1회 변론 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한 경우에는 상소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우선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즉시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에 대한 방침결정) ① 구청장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감사실장의 사전 협의를 받아 응소 여부를 결정(이하 이를 ‘응소방침’이라 한다)한다. 상급 법원에 대한 상소 또는 상소의 포기, 반소 여부(이하, 이를 각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반소방침’이라 한다) 또한 같다.

② 구청장 등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감사실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제소 또는 참가 여부를 결정(이하, 이를 ‘제소방침’이라 한다)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이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소의 취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소송수행을 위한 방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소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다. 상소심 응소의 경우 판결요지 및 상대방 상소사유

라. 응소사유(상소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견서 포함)

마.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바. 접수받은 소장

사.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2.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다. 전심 판결주문 및 판결요지

라. 상소 또는 상소포기의 사유(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견서 포함)

마.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바. 전심 판결문

사.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3. 제소(참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반소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다. 청구원인(제소배경)

라. 제소사유(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의 필요성을 포함한다)

마.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바.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

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지정, 지명 및 선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또는 지명 받은 소송수행자 등이 사망, 퇴직, 전출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함에는 매사건마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 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전에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사건
5.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렵거나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④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지명 및 선임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각각 교부한다. 다만,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 교부와 동시에 해임서를 함께 교부한다.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3.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4.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
 5. 소송수행자 등의 변경 시 - 해임서(별지 제6호서식)
- ⑤ 구와 그 소속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 그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공동당사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변론기일 등에 출석·입회 및 보고
 4.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따

로 두지 아니한 경우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수행한다.

제10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진술 및 보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 진행 사항 종합보고
5.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수행 진행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기획감사실장 참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사항
2. 변론·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5.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서 등을 교부 받은 소송수행자는 제1항·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소송수행자 등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⑤ 소송대리인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임받은 해당 사건의 소송문서 또는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소송고지)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게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소송고지 문서를 송달받은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송에 대한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송부 받아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제13조(반소)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는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상소 포기)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과 사전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포기를 건의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 등 확고한 선례에 부합되어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판결 확정 이후의 조치

제16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가지급된 사건의 경우 가지급물의 반환을 포함한다)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가압류, 가처분의 해제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의 추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1. 추심할 금액이 소액이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4.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
4.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5.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6.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18조(구상권 행사 등)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의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 등(이하 “원인행위 제공자”라 한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기획감사실장은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원인행위 제공자를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사전에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도 그 원인행위 제공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구상금 청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19조(임의변제)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사전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의변제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선고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한한다.

③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별지 제9호서식)
2. 판결서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원)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제4장 소송비용의 지급

제20조(수임료 등)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각 위 지급기준에 따른 수임료를 지급한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취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의 지급에 있어 회계의 구분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소송대리인은 해당 제소사건에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장 직무관련사건

제21조(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을 확인한 후 소송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감사실장과 사전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 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의 접수처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 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 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22조(지원범위) 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가 종결될 때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

② 구청과 관련하여 구청장 등 또는 담당 공무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고발한 형사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한다.

제23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수임료 등 비용지급) ① 직무관련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변호사

에 대한 수입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무죄판결(공소기각결정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비용을 별표 1의 형사사건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방침을 받아 기획감사실장에게 위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5조(비용회수)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기소된 경우 형사사건 변호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후, 유죄 확정시 소요비용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의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 회수
2. 해당 공무원이 금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확정판결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 회수

제6장 보칙

제26조(국가소송 등의 수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절차·직무의 범위, 보고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수행도 제1항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른다.

제27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담당자는 항상 사건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이후라도 구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소송수행 유공자 포상 등) ① 승소판결(소가액이 계산되는 사건은 소가액 기준 60퍼센트 이상 승소인 경우)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2. 승소판결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속담당자 또는 소송사무취급공무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4.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제공이나 계기를
마련한 자

② 포상금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소취하(쌍불취하, 재판상화해 포함)사건 및 구와 사실
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제29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
문서를 작성·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응소·상소·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사건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 ② 기획감사실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관리하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감사실장이 소송 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소송사무의 지도·감독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

구분 소송별	내 용 (소송물가액)	지 급 기 준		
		착 수 금	사 례 금	공 통 경 비
민사 소송	1. 신청사건 가. 변론이 없는 경우 나. 변론이 있는 경우	100,000원 200,000원	1. 승소비율이 60%이상 인 때에는 그 비율을 착수금과 곱한 금액 2. 신청 사건은 지급하지 않음.	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증, 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의 제1호에 따른 여비 5. 그 밖에 실비
	2. 본안사건 (소송물가액별) 1) 5백만원 미만 2)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3)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4)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 5천만원 이상 1억원미만 6) 1억원 이상	250,000원 400,000원 600,000원 1,200,000원 2,000,000원 2,500,000원		
	3. 상고심	본안사건의 1/2이내		
행정 소송 · 헌법 재판소 관할 심판	1. 신청사건 가. 변론이 없는 경우 나. 변론이 있는 경우 2. 각심 본안사건	민사소송의 예에 의한다		
형사 사건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사건 3.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2,000,000원 4,000,000원 6,000,000원		1. 출장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의 제1호에 따른 여비 2. 그 밖에 실비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소송수행자지정서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사 건 명 :
2. 당 사 자 :
3. 법 원 및 사 건 번 호 :

년 월 일

원(피)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대전지방법원장 귀중

(소송수행자 연락처 : 전화번호 , 이메일 , 팩스번호)

[별지 제2호서식]

소송대리인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민사단독심, 공무원수행)

사건번호 [담당재판부 :]
원 고
피 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표자 구청장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인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1. 소송대리인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소 속 대전광역시 대덕구 ○○○실·과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연락처
팩 스 전자우편 : (담당자 기재용)

나. 소송대리인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왔음

2. 소송위임할 사항

-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 다. 소의 취하
- 라.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 마.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 바. 복대리인의 선임
- 사.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 아.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보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 자. 기타 위 소송 관련 사항 일체

위임인 피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표자 구청장 ○○○ (인)

대전지방법원장 귀중

소 송 대 리 인 위 임 장

(민사합의사건 등 변호사 수행)

| 원 고
당사자 |
| 피 고

위 당사자간의 청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주소 대전광역시 구 로(동) 가 번지 호)에게 소송대
리를 위임하고 하기 권한을 수여함.

-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의 화해
- (4) 복대리인의 선임 (5) 목적물의 수령 (6)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
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7) 담보권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정본의 수령, 동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 (8)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위 소송을 위임함.

년 월 일

위 임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표자 구청장 ○ ○ ○

대전지방법원장 귀중

소 송 대 리 인 위 임 장

(행 정 소 송)

{ 원 고
당사자 }
{ 피 고

위 당사자간의 청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주소 대전광역시 구 로(동) 가 번지 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하기 권한을 수여함.

-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의 화해
(4) 복대리인의 선임 (5)목적물의 수령 (6)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
환청구와 수령 (7) 담보권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신청에 대한 동의, 담
보취소결정정본의 수령, 동취소결정에 대항 항고권 포기 (8)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위 소송을 위임함.

20 년 월 일

위 임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대전지방법원장 귀중

지 명 장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귀 직은 금일부터 다음의 소송사건의 담당자로 지명하니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함.

1. 사 건:

2. 원 고:

3. 피 고:

4. 소송담당자의 직무

가.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수집, 조사, 제출

나.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유지관리

다. 각종 방침 결정문의 작성 및 시행

라. 각종 변론기일예의 출석 입회 및 각종 보고

마. 그 밖의 구청장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

년 월 일

위임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표자 구청장 ○ ○ ○

대전지방법원장 귀중

[별지 제6호서식]

해 임 서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 또는 선임된
「 」를 해임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대전지방법원장 귀중

[별지 제7호서식]

패 소 원 인 분 석 표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원 고		피 고		
패 소 원 인				
패 소 원 인 구 분	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			
	증거멸실			
	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			
	소 송 수 행 잘 못	사실적·법률적 검토부족		
		주장 잘못		
		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		
상대방 주장·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기타				
제 안 사 항				
※ 패소원인 구분은 해당란에 “○” 표시				

[별지 제8호서식]

소 송 진 행 상 황 보 고 서				
사 건 번 호	1심		사 건 명	
	2심			
	3심			
원 고			피 고	
소 송 물 가 액			사 건 구 분	공 동 · 지 휘
소 송 수 행 자			전 화 · F A X	
변 론 기 일			다 음 기 일	[]선고 []속행
소 송 진 행 상 황				
구 분	출석여부 및 주장사항			입증방법
원 고				
피 고				
재 판 부 지 시 사 항				
차 회 진 행 예 정 사 항				
소 송 수 행 자 의 견				
첨 부				

[별지 제9호서식]

임 의 변 제 청 구 서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 청구인 등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원고 , 피고 대전광역시 대덕구간의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

구분	지방법원	고등법원	청 구 금 액				
	당사자명	원 고 명	인 용 액	인 용 액	원 금	이 자	합 계
계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소확정증명원) 1부 2. 각서 1부(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5. 위임장,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

각 서

원고 피고 대덕구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 판결이 선고 되었는바 동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 구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고 성명 (인)

주소

원고 성명 (인)

주소

위 소송대리인 성명 (인)

주소

대전지방법원장 귀중

임 의 변 제 청 구 위 임 장

주소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에게

지방법원

가(합)

호

고등법원

나

호(원고 :

피고 :)

대법원

다

호

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액 및 동 금액에 대한 이자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확 약 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성명, 직위, 생년월일 기재)은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출 및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법률지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추후 형사사건의 경우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확정판결 시 또는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에는 대덕구에서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 및 이에 대한 회수 비용 일체를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지원한 비용 등의 회수를 위해 취하는 사전조치, 본안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인)

대전지방법원장 귀중

변 호 인 선 임 신 고 서

피 고 인
(피의자)

사건번호

사 건 명

위 사건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_____ 를
(주소 대전광역시 ○○구 ○○○○○, 전화번호 ○○○-○○○○) 변호
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선임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중

1. 성 명: (인)
주 소:
관 계:

2. 성 명: (인)
주 소:
관 계:

3. 성 명: (인)
주 소:
관 계:

4. 성 명: (인)
주 소:
관 계:

5. 성 명 (인)
주 소
관 계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 정비 및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길고 복잡한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기존 감면에 관한 사항에서 감면·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화 함(안 제1조).

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체계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다.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보완함(안 제3조).

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추정 근거 추가 및 복잡한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함(안 제4조).

마.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위 법령을 따르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7.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무과

(전화 : 042-608-6622, FAX : 042-608-3824, E-mail : smart-life@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무과 담당자 신윤선

(전화 : 042-608-66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특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임대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의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내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 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의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6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공제한다.

제7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177조의2제1항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은 이 조례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1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에 따른다.

제12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다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

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삭제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정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21조의2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

- 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5.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4. ~ 5. (생략)
6.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7. (생략)
8.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 "외국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②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集積)·연계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4.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③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계획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

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 ①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3. (생략)

4.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교육·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 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5. 산업시설구역: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

제40조(입주승인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입주기관이 제37조를 위반하여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

니한 경우

5.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등을 양도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은 그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설립) ①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

- ②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의견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